

4번 난이도 ★★☆☆		오답률 26.4%
정답	해설	교재
④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2-p.545, 천제 918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공제세액에 대한 상세히 묻는 질문으로 시험장에서 마주하면 당황할 수 있으나, 차근차근 선지를 확인하면 정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였다.

918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가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5%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④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 ② 퇴직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④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답 ④

세법 2 LINK p.545-548, 569

오진다 LINK p.506-508, 517

출제 가능성

난이도 지수

5번 난이도 ★☆☆		오답률 26.3%
정답	해설	교재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 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고 국내공급으로 과세한다.	세법1-p.411, 천제 386

386

다음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 ③ 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해설

-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그러나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그러므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것 만으로는 수출된 것이 아니며, 선적되지 않은 재화가 다시 보세구역으로 돌아오는 것은 수입이 아니다.

정답 ②

세법 1 LINK p.411, 412, 479

오진다 LINK p.207

출제 가능성

난이도 지수

6번 난이도 ★☆☆		오답률 37.2%
------------	--	-----------

정답	해설	교재
①	<p>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p> <p>ㄷ.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p> <p>ㄹ.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p>	<p>세법2-p.588, 천제 920, 921, 923</p>

다소 헛갈릴 수 있으나 선지를 전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풀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921

다음 중 양도소득이 아닌 것은?

- ① 미등기된 지상권의 양도소득
- ② 상장법인의 주주가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주식
- ③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④ 미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소득

해설

④ 부동산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미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정답 ④

세법 2 LINK p.586, 588, 590, 591
오진다 LINK p.518, 519
출제 가능지수
난이도 지수

92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상권, 전세권과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②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③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④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해설

① 지상권,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지역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②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③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세법 2 LINK p.586, 588, 595
오진다 LINK p.518, 519, 521
출제 가능지수
난이도 지수

8번 난이도 ★★★		오답률 48%
정답	해설	교재
④	ㄱ.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법2-p.68, 천제 577, 587, 645

ㄴ 선지가 감자차익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한다는 것을 챙겨가지 않았다면 ③과 ④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문제다. 천제에서 충분히 연습했다면 문제없었을 것이라 판단한다.

577

「법인세법」상 익금인 항목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양도금액
- ② 감자차익
-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해설

- ① 토지의 양도금액은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 ② '감자차익'이란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감자차익은 성격상 **자본의 납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익금불산입한다.**
-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추후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할 **예수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익금불산입한다.**
-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이미 설립된 완전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총수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란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주식 발행초과액과 같은 성격으로서 익금불산입한다.** 정답 ①

587

「법인세법」상 익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익 ₩300,000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300,000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중 세무상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합병·분할로 인한 결손금 아님)을 보전하는 데 상당한 금액은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의 경우로서 그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상당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으며,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상당하고, 상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게 되는 경우에 상당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④ 법인의 채무 ₩6,000,000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 시가 ₩4,000,000)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00,000을 손익계산서상 채무조정 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2,500,000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 ① 감자차익은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격상 **자본의 납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익금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해야 한다.
- ④ 법인의 채무 ₩6,000,000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 시가 ₩4,000,000)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00,000을 손익계산서상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500,000(기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④

9번 난이도 ★★★ 오답률 61.1%

정답	해설	교재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익은 아님)은 익금불산입한다. ●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당기순이익 1억 원 - 임의평가익 1천만 원 = 9천만 원 </div>	세법2-p.60, 84, 86, 241, 천제 594, 597, 598, 815, 677, 모의고사 3회 6번, 4회 9번

해당 문제는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 풀 수 있는 계산문제로 난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소액주주 부분은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본 강사는 천제에서 해당 부분을 연습시켰다. 천제와 모의고사를 충실히 풀어본 수험생은 어렵지 않게 답을 계산했을 거라 판단한다.

59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2022.12.31.)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공정가치 700,000원)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500,000원)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2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 ② 전기 초 2년분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 후 당기 말 250,000원을 (차)임차료비용과 (대)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 ③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 1,500,000원을 손금산입(기타)로 조정하였다.
- ④ 유형자산의 임의평가이익 2,000,000원을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손금산입(△유보)와 손금불산입(기타)로 각각 조정하였다.

해설

③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따로 세무조정은 없다. 정답 ③

세법 2 LINK p.68, 88, 91 124
 오inda LINK p.329, 337, 339, 350

출제 가능성
 난이도 지수

09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보다 3억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그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②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적법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③ 법인이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기업회계 기준의 상각 또는 환입방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시가법으로 평가하고 회계상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94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된다.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항목이 아니지만,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익금항목이다.

해설

- ①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①

세법 2 LINK p.59, 82, 94
 오inda LINK p.324, 337, 343
 출제 가능지수
 난이도 지수

815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 ② 주주인 임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③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식사를 따로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월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 ④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 ①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② **소액주주 임원의 경우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 ③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대**는 월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다만,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만 비과세이다.**
- ④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용하며, 이에 따른 금액을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정답 ②

세법 2 LINK p.452, 457, 460
 오inda LINK p.480, 482, 483
 출제 가능지수
 난이도 지수

세법 2 LINK p.82, 83, 86, 91

오진다 LINK p.335, 337, 340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직장체육비와 직장 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직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 ② 벌금, 과료, 과태료(과태금 포함),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은 벌금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 ③ 법인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과세소득(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처분하는 성격의 조세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면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 ④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이 '조세 외의 강제적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597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 ②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한다.
- 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문화비와 직장회식비는 접대비로 본다.
- ④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해설

-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급여한도 규정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②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문화비와 직장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본다. 정답 ④

세법 2 LINK p.84, 85, 86, 213

오진다 LINK p.335, 337, 383

출제 가능자수

난이도 지수

10번 난이도 ★★☆☆		오답률 26.6%
정답	해설	교재
③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세법1-p.216, 천제 259
<p>국세기본법의 9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난도가 매우 높아진다. 이런 문제들은 미리 연습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처음 접하게 되면 헛갈려서 풀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강사는 9장 보칙에서 헛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천제를 통해 연습시켰다. 해당 문제도 천제를 충실히 연습한 수험생이라면 수월히 풀었을 것으로 예상한다.</p>		

259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중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 ③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 ④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해설

①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중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부분조사의 횟수에 제한이 없다.**
[통합조사의 예외]

특정 세목만 조사	부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불복청구의 인용결정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재택결정 중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여기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결정청구에 대한 처리 및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확인'을 포함함
① ㉠과 ㉡의 경우 부분조사의 횟수 제한이 없음! 정답 ①

세법 1 LINK p.216

오답률 LINK p.86.

출제 가능지수

난이도 지수

11번 난이도 ★☆☆		오답률 23.4%
정답	해설	교재
③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 에 포함한다.	세법2-p.155, 천제 660
<p>660</p> <p>「법인세법」상 증식상각의제와 관련된 다음의 지출 중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p> <p>① 냉난방장치의 설치</p> <p>②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p> <p>③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p> <p>④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기계의 복구</p> <p>해설</p> <p>②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정답 ②</p>		<p>세법 2 LINK p.155</p> <p>오진다 LINK p.361</p> <p>출제가능지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난이도 지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12번 난이도 ★☆☆		오답률 20.2%
정답	해설	교재
②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재산은 열거주의에 의하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석 또는 자동차는 자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재산이므로 납세담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세법1-p.278, 천제 286
<p>286</p> <p>「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p>① 금전 및 보험에 든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p> <p>② 상장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p> <p>③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등록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의 가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p> <p>해설</p> <p>①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재산은 열거주의에 의하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다. 자동차는 열거된 납세담보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보석(귀금속), 자동차 함정 주의</p> <p>②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p> <p>④ 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의 가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정답 ③</p>		<p>세법 1 LINK p.278-279</p> <p>오진다 LINK p.133, 134</p> <p>출제가능지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p>난이도 지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p>

정답	해설	교재
④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세법2-p.112, 440, 461, 479, 썬헌련2-P75 25번

해당 문제는 소득세법상의 수입시기가 암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풀기 어려웠을 문제다. 이전 기출에서 수입시기로 자주 등장하던 선지는 없어 (① 잉여분 처분결의일은 출제된 바 있었으나 법인세법에서 출제되었다) 더욱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⑩ 금융소득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① 각종 예금의 이자: 실제로 지급받는 날
- ②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②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잉여금처분결의일
- ② 무기명주식의 배당소득: 배당을 지급받은 날

3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에 따른다(소령 49).

구분	수입시기
①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하는 날*
③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④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⑥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급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단,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

*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3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소령 50 ⑤).

구분	수입시기
①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사적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③ 그 밖의 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25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할인액은 (지급받기로 한 날 / 실제로 수입된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25 실제로 수입된 날

552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와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④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

해설

- ④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라도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으로 분류된다.**

정답 ④

세법 2 LINK p.21, 22, 26, 27
오진다 LINK p.302, 303, 306, 307

출제 가능지수
난이도 지수

15번 난이도 ★☆☆		오답률 33.7%
정답	해설	교재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정지 된다.	세법1-p.88, 모의고사 4회 2 번

02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다.
- ③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및 6개월 이상 국외체류 체납자의 국외체류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한다.

02

정답 ③

세법 1 LINK p.81, 86-88
오진다 LINK p.35, 40

-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및 6개월 이상 국외체류 체납자의 국외체류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하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장래를 향하여 부과권이 소멸한다.

16번 난이도 ★★☆☆		오답률 42.4%
정답	해설	교재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세법2-p.216, 천제 685, 모의고사 2회 17번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관련된 문제 중 섞여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다. 본 강사는 해당 부분을 천제와 모의고사를 통해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천제와 모의고사로 충실히 준비한 수험생은 문제 없이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685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②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③ 부도발생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해당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④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설

③ 부도발생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비방가액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정답 ③

세법 2 LINK p.216, 217

오진다 LINK p.385-386

출제 가능지수

난이도 지수

1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ㄱ.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ㄴ. 금융회사 등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을 인정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ㄷ. 내국법인(금융회사 등 제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ㄹ.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④ ㄴ, ㄹ

17

정답 ③

세법 2 LINK p.216, 218

오진다 LINK p.385-387

- ㄴ. 금융회사 등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을 인정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ㄹ.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해설 교재

- ③
-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이상이므로 안분계산 생략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분계산 생략에 해당되지 않는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단서가 없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안분계산 생략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text{공통매입세액} \times \frac{\text{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text{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0\text{만 원} \times \frac{200\text{만 원}}{500\text{만 원}} = 8\text{만 원}$$

∴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면세사업의 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 10\text{만 원} + 8\text{만 원} = 18\text{만 원}$$

세법1-p.583,
584
천제 525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의 단골 계산문제이다. 해서 본 강사는 기본서에서 예제를 통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안분계산의 접근법을 연습시켰다. 또한 천제에서 안분계산 문제를 다소 보수적으로 난도 높게 대비시켜주었다. 따라서 기본서와 천제를 충실히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17번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제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40,000,000에 매입하였다. 다음 각각의 경우, 20X2년 제1기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하시오.

경우 1

구분	20X1년 제2기 과세표준	20X2년 제1기 과세표준
과세사업	₩320,000,000	₩250,000,000
면세사업	₩80,000,000	₩150,000,000

경우 2

구분	20X1년 제2기 과세표준	20X2년 제1기 과세표준
과세사업	₩200,000,000	₩390,000,000
면세사업	₩200,000,000	₩10,000,000

풀이

경우 1 공제되는 매입세액 = $(₩40,000,000 \times 10\%) \times \frac{₩250,000,000}{₩400,000,000} = ₩2,500,000$

∴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이상이며,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37.5% = ₩150,000,000/₩400,000,000)이므로 당기 공급가액을 기초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을 한다.

경우 2 공제되는 매입세액 = ₩40,000,000 × 10% = ₩4,000,000

∴ 면세비율이 2.5%이며,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52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은의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가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1)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구분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매입분
원재료	₩50,000,000	₩30,000,000	-
비용	₩10,000,000	₩5,000,000	₩2,000,000
기계장치	-	-	₩10,000,000

•비중: 2022년 4월 20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구입하였으며,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비용을 사업에 사용하던 중 2022년 6월 30일 ₩16,5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였다.

•기계장치: 2022년 5월 20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2)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차량(트럭)을 2022년 4월 15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등 차량은 2020년 12월 10일에 ₩44,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였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구분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과세사업	70%	80%
면세사업	30%	20%

① ₩67,200,000 ② ₩67,400,000 ③ ₩70,100,000 ④ ₩70,200,000

해설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text{과세사업분 매입세액} + \text{공통매입세액} + \text{과세사업 전환분 매입세액}$$

$$= ₩60,000,000 + ₩9,400,000 + ₩800,000 = ₩70,200,000$$

① 과세사업분 매입세액 = ₩50,000,000 + ₩10,000,000 = ₩60,000,000

② 공통매입세액: ① + ② = ₩9,400,000

③ 비용 관련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료를 공급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따라서 비율의 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0,000 \times 70\% = ₩1,400,000$$

④ 기계장치 관련 공통매입세액: 실제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10,000,000 \times 80\% = ₩8,000,000$$

⑤ 과세사업 전환분 매입세액: ₩4,000,000 × (1 - 25% × 3) × 80% = ₩800,000 정답 ④

18번 난이도 ★☆☆		오답률 24.4%
정답	해설	교재
④	<p>①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수시부과로만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p> <p>②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세법1-p.220, 세법2-p.559, 613, 천제 962, 썬헌련1 p45 31번, 썬헌련2 P100 31번</p>

962

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함이 원칙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이자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비거주자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④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 ③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에 관하여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③

31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1 3개월

3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1 과세예고, 30일

세법 2 LINK p.553, 630, 635, 638

오진다 LINK p.512, 531, 534, 536

출제 가능자수

난이도 지수

정답	해설	교재
③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를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날 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법1-p.425, p.426, 천제 387, 393, 399,

③은 지엽적이라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①, ②, ④ 선지가 잘 숙지되어 있었다면 소급하여 풀 수 있는 문제다.

393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②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④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해설

④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④

세법 1 LINK p.422, 425
 오진다 LINK p.210, 213

출제 가능지수
 난이도 지수

39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②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③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④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을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인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은 경우

해설

②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②

세법 1 LINK p.426, 427

오진다 LINK p.214

출제 가능지수

난이도 지수

387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부동산의 임대)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 ②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 ④ 부동산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임대료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해설

④ 부동산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임대료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경우 정리]

구분	거래형태
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단,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부동산의 임대)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단, 역무의 제공 완료 이후 받기로 한 대가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정답 ④

세법 1 LINK p.425

오진다 LINK p.213

출제 가능지수

난이도 지수

20번 난이도 ★★★		오답률 64%																																		
정답	해설	교재																																		
②	<p>필요경비 계산제도에 따른 필요경비 (단위: 만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받은 대가</th> <th>x</th> <th>법에 정한 %</th> <th>=</th> <th>필요경비 계산제 도에 따 른 필요경비</th> </tr> </thead> <tbody> <tr> <td>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td> <td>300</td> <td>x</td> <td>60</td> <td>=</td> <td>180</td> </tr> <tr> <td>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td> <td>300</td> <td>x</td> <td>60</td> <td>=</td> <td>180</td> </tr> <tr> <td>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td> <td>400</td> <td>x</td> <td>60</td> <td>=</td> <td>240</td> </tr> </tbody> </table> <p>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단위: 만 원)</p> <table border="1"> <tbody> <tr> <td>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td> <td>$300 - \text{MAX}[150, 180] = 120$</td> </tr> <tr> <td>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td> <td>$300 - \text{MAX}[100, 180] = 120$</td> </tr> <tr> <td>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td> <td>$400 - \text{MAX}[100, 240] = 160$</td> </tr> <tr> <td>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td> <td>비과세</td> </tr> <tr> <td>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td> <td>4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는 별도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의 60%를 공제할 수 있다. ●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는 별도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의 60%를 공제할 수 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는 별도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의 60%를 공제할 수 있다. ● 종업원 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구분	받은 대가	x	법에 정한 %	=	필요경비 계산제 도에 따 른 필요경비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	x	60	=	180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300	x	60	=	180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	x	60	=	240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 - \text{MAX}[150, 180] = 120$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300 - \text{MAX}[100, 180] = 120$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 - \text{MAX}[100, 240] = 160$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400	<p>세법2-p.488, p.485, 천제 844, 845, 891</p>
구분	받은 대가	x	법에 정한 %	=	필요경비 계산제 도에 따 른 필요경비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	x	60	=	180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300	x	60	=	180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	x	60	=	240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 - \text{MAX}[150, 180] = 120$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300 - \text{MAX}[100, 180] = 120$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 - \text{MAX}[100, 240] = 160$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400																																			

해당 문제는 필요경비 계산제도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라는 사실도 챙겨가지고 있어야 오답을 피할 수 있는 문제로 난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845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08년 직장공제회에 최초로 가입하고 수령)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②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골동품의 양도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③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④ 산업정보·산업상비밀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의 경우 별도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그 받은 금품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해설

- ④ 산업정보·산업상비밀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의 경우 별도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그 받은 금품의 60%를 필요경비로 한다. 정답 ④

세법 2 LINK p.396, 485, 487, 488
 오진다 LINK p.460, 491, 493
 출제 가능성
 난이도 지수

844

다음 중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가 가장 적은 것은?

- ① 대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대학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원고료 ₩300,000을 받았다.
- ② 대학교수가 TV토론방송에 출연하고 ₩1,000,000을 받았다.
- ③ 주택임주지체상금 ₩1,000,000을 받았다.
- ④ 슬롯머신에 ₩500을 투입하여 당첨금으로 ₩2,000,000을 받았다.

해설

문제에서의 소득은 모두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다.

- ① $₩300,000 \times (1 - 60\%) \times 20\% = ₩24,000$
- ② $₩1,000,000 \times (1 - 60\%) \times 20\% = ₩80,000$
- ③ $₩1,000,000 \times (1 - 80\%) \times 20\% = ₩40,000$
- ④ 200만원 이하의 슬롯머신 당첨금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다. 정답 ④

세법 2 LINK p.488, 489
 오진다 LINK p.491, 492, 494
 출제 가능성
 난이도 지수

거주자 한국씨의 2022년 자료이다. 한국씨의 종합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계	연령	소득
ㄱ. 본인(여성)	38세	총급여액 ₩60,000,000
ㄴ. 배우자	40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육아휴직급여 ₩6,000,000
ㄷ. 부친	72세	일시직 강연으로 수령한 금액 ₩8,000,000
ㄹ. 모친	67세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전동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8,000,000
ㅁ. 장남	16세	소득 없음
ㅂ. 동생(장애인)	38세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 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600,000과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1,500,000을 납부하였다.

(3) 부친과 모친은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며, 장남은 기숙사 생활로 별거하고 있다.

- ① ₩7,500,000 ② ₩8,100,000 ③ ₩10,100,000 ④ ₩11,600,000

해설

ㄱ. 본인이 여성이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ㄴ. 부친과 모친이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 등은 일정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간주한다). 배우자의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는 「법소정의 요양비」의 성격으로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ㄷ. 부친의 일시직강연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일시직강연에 의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적용한 기타소득금액은 ₩3,200,000(₩8,000,000 × (1 - 60%))이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이상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모친의 전동주 제조 소득금액이 1,200만 이하이므로 비과세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ㅁ. 장남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ㅂ. 동생은 장애인이므로 나이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장애인공제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씨의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다.

(1) 인적공제 : ① + ② = ₩9,500,000

① 기본공제 : ₩1,500,000 × 5명(본인, 배우자, 모친, 장남, 동생) = ₩7,500,000

② 추가공제 : ₩2,000,000(장애인공제)

(2) 특별소득공제 : ₩600,000(보험료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 ₩1,500,000

(4) 종합소득공제 : (1) + (2) + (3) = ₩11,600,000

정답 ④

세법 2 LINK p.424, 455, 484,
488, 518-520, 522, 523
오인더 LINK p.489, 491, 493,
500-502

출제 가능지수
난이도 지수